



Department of Justice

즉시 배부용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WWW.JUSTICE.GOV

CRT

(202) 514-2007

TTY (866) 544-5309

연방정부 부처들, '비상 대비, 대응, 복구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민의 권리법 제 6 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 안내서 발행

워싱턴 DC – 법무부(Justice),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교통부(Transportation)는 오늘,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이 비상 대비, 대응,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피부색이나 출신국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 안내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964 년 시민의 권리법 제 6 장은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당사자의 비상 대응 조치에서 차별이 있다면 1964 년 시민의 권리법 제 6 장을 위반하는 결과로 됩니다.

허리케인 시즌의 공식적인 기간(6 월 1 일 - 11 월 30 일)과 일치하는 본 안내서에서는 지원 받는 당사자들이 자율준수를 위해 지금 채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 주택, 건강 서비스, 다른 비상 상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및 다양한 인종, 민족, 제한적 영어구사능력(LEP)을 가진 인구집단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 다양한 인종, 민족, 제한적 영어구사능력(LEP)을 가진 인구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인구집단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비상 계획을 세우고,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형편에 맞게 추진.
- 대피 및 재난 대비 계획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인구집단을 포함시켜서 넓게 전파.
-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는 이민 지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알도록 홍보.
- 자원과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악영향을 받기 쉬운 인구집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분석.

“법에 따르면, 연방 자금을 받는 당사자는 비상 시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사회에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법무부 산하 시민권리국장 Vanita Gupta 씨가 말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미래의 허리케인이나 산불, 기타 재난 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법 제 6 장의 준수 의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금 수령 당사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라고 교통부의 시민권리사무국의 국장 **Leslie Proll** 씨가 말했습니다. “그 규정은 항상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 시와 재난 시는 물론, 발생 이전과 종료 후에도 포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 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서 제한적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인구집단에 다가가기 위한 법무부의 요령과 방법”과 “커뮤니티 전체의 통합력을 비상사태 관련 활동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방 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체크리스트” 등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오늘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관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비상 시와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시민권리사무국 국장 **Jocelyn Samuels** 씨가 말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비상 대처를 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제 6 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전체와 개인들을 최선으로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료와 안내서 모두, 정부기관들의 웹사이트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웹사이트의 ‘새로운 시민의 권리 섹션’ www.fema.gov/media-library/assets/documents/26070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절차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FEMA 의 ‘평등권국’ **Willisa Donald** 국장이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문제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우리에게 협조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공정성과 평등성 가치를 따르게 하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 6 장의 요건을 준수하고, 연방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필수적 서비스와 지원에서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상황과 재난상황에서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라고 국토보안부 산하 ‘시민의 권리 및 자유실’의 **Megan H. Mack**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연방정부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영어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국가적 대비에 기여하고 또한 그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국가 대비 목표 및 국가기획 프레임워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집을 잃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을 다시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중요한 시기에 차별에 의해 자신의 피해가 더욱 증폭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공정한 주택 및 동등한 기회실’ 부실장 **Gustavo F. Velasquez** 씨가 말했습니다. “이 공동안내서는, 연방 자금을 받는 당사자들도 국가적 비상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국과 위 정부기관들의 시민의 권리 담당부서는, 연방 자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제 6 장을 강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부서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시민의 권리국 - www.justice.gov/crt; 법무실 프로그램의 시민의 권리실 - <http://ojp.gov/about/offices/ocr.htm>; 법률구조실 - <https://www.justice.gov/atj>;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의 권리 및 자유실 - <https://www.dhs.gov/office-civil-rights-and-civil-liberties>; 보건복지부 산하 시민권실 - www.hhs.gov/ocr/;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공정한 주택 및 동등한 기회실 -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 교통부 산하 시민의 권리실 - <https://www.transportation.gov/civil-rights>.

###

16-XXX

이 글에 답장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으실 경우, 글 안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거나 공무실(OFFICE OF PUBLIC AFFAIRS)에 202-514-2007 로 연락하십시오.